

## 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한 연구

- 모럴 패닉 모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 Focused on Moral Panic Model -

Wook Kang\*, Yun Sik Jang\*\*, Young Jin Song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74, Eonnam-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Soonchunhyang University, 22, Soonchunhyang-ro, Sinchang-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 Abstract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has become one of main issues because the investigations of child-sex offenders revealed that child-sex offenders stored lots of child pornography and watched them before or after they committed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rosecuted 1,411 cases in 2012 and 2,654 cases in 2013 in child pornography crackdown. There have been differences of opinions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This research analyzed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with moral panic model. We surveyed public perceptions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nd investigators' perceptions on the issue. The results indicated that public insisted that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should be strengthened while investigators reported that the current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re appropriate. While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in Kore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more appropriate policies on child pornography.

**Key words:** child pornography, moral panic model, perception survey,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

\* First author. Tel. +82-31-620-2963. E-mail. kangw@police.go.kr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1-530-4756. E-mail. jakejang@sch.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Nov. 18, 2014 / Revised: Nov. 24, 2014 / Accepted: Nov. 28, 2014

### 국문초록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성범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수많은 아동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범행전후에 이를 시정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성범죄 사건과 더불어 아동음란물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2012년에 1,411건, 2013년에는 2,654건을 적발하였는데, 처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는가 하면, 아동음란물 소지 등으로 단속을 받은 사람들이 포럼 등을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해 모럴 패닉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인의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인들은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해 보다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수사관들은 현재의 처벌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모럴 패닉 모델로 설명될 수 있으며, 아동음란물의 처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아동음란물, 모럴 패닉 모델, 인식조사, 아동음란물 소지

##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아동음란물 배포·판매·소지가 용이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아동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유인행위(child grooming)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범죄자들이 쉽게 범행대상 아동을 선정하여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아동음란물의 피해자 연령은 하향 추세이며, 음란물의 양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아동음란물은 조직범죄 집단에 대해서 수익성 좋은 사업모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민간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해 활동 중이며, 특히 몇몇 국가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음란물을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하여금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전남 나주,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아동성폭행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범죄자의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되었고 범죄자들이 아동음란물에 심취해있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음란물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2년과 2013년 대대적인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총 1,411건, 2013년에는 총 2,654건의 아동음란물을 단속하였다<sup>1)</sup>.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청의 아동음란물 집중단속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및 불만의 목소리가

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2012; 2013).

커지면서 헌법재판소에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으며<sup>2)</sup>,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거나 온라인 포럼을 형성하여 단속정보 및 조사내용 등을 공유하는 실태가 생겨났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 단체나 일부 인권단체, 학계 등에서는, 아동음란물 사범은 잠재적 성범죄자이며, 처벌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아동음란물 이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음란물의 처벌, 특히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처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떠한 처벌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럴 패닉 모델(Moral Panic Model)<sup>3)</sup>을 중심으로 우리사회가 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럴 패닉 모델을 언급한 논문이 4건이 발견되고 있으나, 3건은 모럴 패닉 모델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원인 정도로만 소개되고 있으며, 1건만이 모럴 패닉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이는 성폭력 대책에 관한 것이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모럴 패닉 모델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모럴 패닉이 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음란물 소지자를 실제 검거하여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처벌에 대한 인식도와 일반 국민의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처벌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아동음란물 대응 실태

### 1. 모럴 패닉 모델의 기원과 개념

“모럴 패닉”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72년 Stanley Cohen의 저술 “Folk devils and moral panics: The creation of the mods and the rockers”에서이다. 모럴 패닉 모델은 여러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 낙인이론(labeling theory), 집단행동 이론(collective behavior theory) 등의 여러 기존 범죄학 이론을 차용하였

2) 한겨레(2014. 10. 7).

3) 모럴 패닉 모델(Moral Panic Model)은 ‘도덕적 공황 모델’로 번역이 될 수 있으나, 국내 논문 중 모럴 패닉을 다룬 논문은 4건(양정혜, 2010; 김태명, 2011; 한영수, 2013; 이웅혁·강욱, 2013)이 발견되었으나, 모두 ‘도덕적 공황’ 대신 ‘모럴 패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의미의 보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모럴 패닉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4) 양정혜(2010)의 경우 모럴 패닉과 언론보도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김태명(2011)은 성폭력범죄 대책이 복잡한 이유 중의 하나로 모럴 패닉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나, 모럴 패닉의 기원이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다. 한영수(2013)는, ‘위험한 범죄자’의 관념이 형성되는 원인으로서 대중매체의 영향과 모럴패닉을 언급하였으며, 이웅혁·강욱(2013)의 경우 모럴 패닉 모델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대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Ben-Yehuda, 2009). 이 모델은 특히 과장된 공포가 일어나는 과정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도덕적 가치와 공포가 어떻게 충돌하며,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도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며, 과장된 공포가 여기에 이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Ben-Yehuda, 2009).

또한 모럴 패닉 모델은 공포뿐만 아니라 원한(ressentiment)과 분노(resentment)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한을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원한은 다시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Young, 2009).

모럴 패닉 모델은 성폭력, 매춘, 마약, 그룹섹스 등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범죄 또는 사회현상들을 설명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회가 왜 그렇게 대응하게 되었는지와 같은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모럴 패닉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Campos, *et al.*, 2006; McRobbie & Thornton, 1995; Weitzer, 2005).

Cohen(1972)에 따르면 어떤 사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 그러한 사건이나 개인 또는 집단은 언론에 의해 정형화되어 진다. 이렇게 정형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후에는 성직자, 정치인 등 사회에서 바른 생각을 한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덕적 장막(moral barricade)을 설치하기 시작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전문가로 명망 높은 사람들이나 그룹들은 사회적 위협이라고 간주되는 개인, 집단 또는 사건의 진단과 분석을 발표하게 된다. 처음에 시작이 된 어떤 사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이 사라지더라도 그 잔영이 지속되면서 모럴 패닉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럴 패닉이 증폭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진 모럴 패닉은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되어, 결국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정책의 입안으로 이어지는데, 실제 현상의 해결보다는 도덕적 가치의 보존에 더욱 큰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모럴 패닉 모델에서는 5가지의 사회 부문들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는 언론, 대중, 법집행기관, 국회 의원 및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단체이다.

우선 언론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시키기도 하며, 사건 관계인들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정형화시키기도 한다(Cohen, 1972).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일탈을 ‘폭동’, ‘반사회적 행동’, ‘사회 파괴적 사건’ 등으로 묘사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한다. 나중에 이러한 보도들이 사실이 아닌 것이나 과장된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갈 뿐이다. 언론의 과장 보도, 왜곡 보도, 선정적 보도, 사건관계인들의 정형화 등으로 인하여 모럴 패닉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Cohen은 두 번째로 대중의 우려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의 우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일련의 여러 사건들에 의해 잠재되어 있다가 언론의 보도와 만나게 되면서 폭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언론보다는 냉정한 태도를 취하지만,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와 앞서 발생했던 일련의 이슈들이 더하여 질 때는 모럴 패닉에 빠져들게 된다.

법집행기관은 사회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는 일반적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등 법집행기관이 확실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Cohen, 1972). 일반적으로 법집행기관은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대해 처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며, 강력한 법집행을 정당화하게 된다. Cohen은 이를 모럴 패닉의 상승작용(escalation)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사회가 겪고 있는 사건이나 문제,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심각한 관심을 표명하며, 이를 야기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이러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Levi, 2009). 많은 정치인들은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은 수감되어야 하며, 장기간 사회에 격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법의 제·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Cohen, 1972).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사회의 정의를 위해 악마와 싸우는 천사로 묘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격하기 쉬운 목표(easy target)를 악마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국 지능범죄(white collar crime)보다는 폭력 범죄(violent crime)에 대해 보다 많은 규제와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다(Levi, 2009).

마지막으로 모럴 패닉은 시민단체에 의해 완성되는데,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대응방식으로 사회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믿는 “도덕적 신념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법집행기관과 정치권에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는 법집행기관과 정치권의 강력한 대응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Cohen, 1972).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대중은 이를 통해 사회의 잠재적 요소로 되어 있던 사회에 대한 위협들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 공포와 불안, 또는 모럴 패닉은 법집행기관과 정치권으로 하여금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과 대응을 요구하게 되고, 시민단체들 또한 이를 지지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된다는 일련의 과정을 Cohen의 모럴 패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2. 한국 경찰의 대응현황

전술하였듯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 성범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아동음란물들이 범죄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사실이 밝혀지고 범행 전후에 아동음란물을 시청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성범죄 이슈와 더불어 아동음란물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담조직 설치, 국제공조강화, 웹하드·P2P 사이트 일제 단속,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 포털사 등 민간참여 적극 유도, PC·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한 음란물 유통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2년 “아동음란물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찰청은 2012년 당시 사이버테러대응센터(현, 사이버안전국) 내에 『아동음란물 대책팀』을 구성하여 임시조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해 아동음란물 사범 총 1,758명을 검거하고 총 1,411건을 단속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

인 ‘4대 사회악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4월부터 10월 까지 실시하여 14명을 구속하는 등 총 2,889명의 아동음란물 사범을 검거하고 총 2,654건을 단속하였다.

위와 같은 집중단속기간 운영 외에도 경찰청은 음란물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홍보·교육을 추진하는 등 예방활동도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인터폴 아동범죄대응팀(Crimes Against Children Unit)에서 교관을 파견 받아 사이버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동음란물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수사관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FBI의 국제 아동음란물 태스크포스(III TF)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호주 연방경찰이 주축이 되어 2003년 설립된 아동음란물 대응 국제 범집행기관 협의체인 가상 글로벌 태스크포스(Virtual Global Taskforce, VGT)에도 가입하여 정기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 사례를 발표하는 등 국제협력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 2. 주요 선진국의 대응현황

### 1) 미국

미국은 자국 내 범집행기관 네트워크인 아동대상 인터넷범죄 태스크포스 프로그램(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Task Force Program, ICAC Program)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ICAC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10개의 TF팀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3,000여개 이상의 연방, 주, 지역 범집행기관 및 소추기관으로 구성된 61개의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사후대응 및 선제적 대응, 포렌식 수사 및 범죄소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 및 지역 범집행기관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아동음란물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아동대상 인터넷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시켜왔다.

ICAC 프로그램은 아동과 10대들의 인터넷 사용증가, 아동음란물의 만연 및 온라인에서 미성년인 잠재적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범죄자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회계연도 1998년 사법예산책정법(Justice Appropriations Act)에서는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국에 아동성착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주 및 지역단위 범집행기관의 사이버유닛의 범국가적 네트워크를 창설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결과 ICAC 태스크포스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또한, 2008년 아동보호법에서는 아동착취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아동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sup>5)</sup>

5) <https://www.icactaskforce.org/Pages/Home.aspx> 참조.

또한 미국 FBI는 아동음란물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국제 아동음란물 태스크포스(International Innocent Images Taskforce, IIITF)<sup>6)</sup>를 신설하여 44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매년 태스크포스에서는 새로운 회원들의 훈련 세션을 개최하여 신규 회원으로 가입된 경찰관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FBI의 Innocent Images Operations Unit의 특수요원들과 함께 6주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IIITF는 사건 조정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태스크포스 회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최적 관행(best practices)을 공유하고 회원국들 간의 초국가적 범죄수사를 조정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IIITF는 FBI와 회원들 사이의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 세계 법집행기관들이 온라인 아동 성착취라는 국제적인 범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 영국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는 영국 국가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 NCA)을 구성하는 4개의 국(command) 중 하나로, 아동에 대한 주요 위협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국 내외에 아동보호기구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범죄자들에 대한 검거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CEOP는 NCA가 주도하는 작전을 통해서 또는 지방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대상 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경찰관들은 광범위한 아동보호 커뮤니티, 민간기업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CEOP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범죄자들을 척결하고, 아동성착취에 연루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아동을 성착취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아동보호 활동을 통해 아동성착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아동성애자 및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의한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등록된 성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여기에는 성범죄자들의 이동을 예방하고 국제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배포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또한 영국으로 입국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포함한다.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조직범죄 그룹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역경찰에 대한 컴퓨터 포렌식이나 위장수사 등의 지원업무도 수행한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민간기업과도 협력하여 아동성착취에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전문가들은 지식, 기술 및 부모, 아동 등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CEOP의 가장 최근의 수사사례로는 인터폴, 호주 연방경찰(AFP)과 합동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4

6)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이 가입하였고 국제공조수사 및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http://www.fbi.gov/about-us/investigate/vc\\_majorthefts/innocent/innocent-images-international-task-force](http://www.fbi.gov/about-us/investigate/vc_majorthefts/innocent/innocent-images-international-task-force) 참조.

년 1월까지 약 1년간의 단속작전을 벌여 필리핀에서 온라인 아동성학대를 조장해온 범죄조직을 검거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피해자는 주로 필리핀 아동들이었고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웹캠으로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성학대를 했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조직원 중 일부는 아동의 가족구성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작전 결과 15명의 피해아동이 구호되었다. NCA CEOP에 따르면 웹캠을 성학대에 이용하는 것은 특히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극도의 빈곤, 초고속 인터넷 기술 그리고 해외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아동음란물 소비자의 존재가 원인이 되어 조직범죄집단으로 하여금 금전적 이득을 위해 아동을 학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sup>

### 3) 독일

독일은 아동음란물 사범을 중대조직범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연방범죄수사청(BKA) 중대조직범죄국(SO) 직속으로 아동음란물 수사 전담조직인 중앙아동음란물수사대(Central Child Pornography Unit)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범죄 정보분석 및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버범죄 수사 및 국제공조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범죄과(SO43)와는 별도의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범죄 대응조직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및 각 지방경찰청 내의 사이버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아동음란물 범죄를 다루고 있는 반면 독일 BKA는 아동음란물 수사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BKA의 중앙아동음란물수사대는 국내/국제협력의 접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여기에서는 아동음란물 발견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아동음란물의 제작 또는 배포사범, 피해자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 독일 BKA의 대응목표는 온라인 성학대의 범죄자와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들의 신원을 확인함에 있다.<sup>8)</sup>

### 4) 일본

일본은 국제적으로 아동음란물의 주요 근원지로 알려져 있다. 비록 일본에서도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는 불법이지만, 단순 소지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 아동음란물 사건은 최근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일본 정부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9년 경찰, 교육기관, 사법부, 기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창설하였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만화가 일본의 수익성이 좋은 망가(manga, 만화) 시장에서 상당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만화들 중 대부분은 여학생 또는 아동 같은 성인이 강간을 당하거나 가혹적인

7) <http://nationalcrimeagency.gov.uk/news/312-live-online-child-abuse-29-international-arrests-made> 참조

8) BKA(2008: 19).

성행위에 관여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는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하고 있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게임이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그래픽과 같이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아동을 묘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형법상 외설도화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아동음란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온라인 아동음란물과 관련하여 2006년 11월,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에 따르면, 일본이 아동음란물 웹사이트가 가장 많이 호스팅되는 국가 중 3위를 차지하였다. 웹 사용자들에 의한 온라인 성학대 중 약 16,250개(전체의 11.7%)의 웹사이트가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11월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아동음란물이 호스팅되는 5개의 국가 중 4위를 차지하였다(ECPAT International, 2006).

일본 경찰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총 1,678명, 사건은 총 2,297건이라고 한다. 이 중 아동음란물 사건은 총 1,455건이며 총 1,016명이 검거되었으며 인터넷의 이용이 관여되어있는 사건은 883건(60.7%), 725명(71.4%)이다. P2P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거된 사건 수는 368건이며 2010년도에 비하여 135.9%가 증가하였다.<sup>9)</sup>

아동음란물 범죄와 관련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 경찰청은 2009년 6월, 생활안전국 소년과 및 정보기술범죄대책과를 중심으로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the Strategic Programme to Combat Child Pornography)”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종합적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단속/유통 방지/피해 아동 지원과 같은 3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단속에 대해서는 이미지분석반 설치 등 경찰청의 정보분석기능 강화, 외국 수사기관의 연수 참여 등을 통한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검토, 외국 수사기관과의 연계 강화, 아동 포르노 애호가 그룹의 철저한 검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아동음란물 유통 방지 대책의 추진에 관해서는, 아동음란물 게재 주소 목록 작성 및 관리 단체(가칭) 창설에 협력하고 정보를 제공,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인터넷 핫라인 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발견·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이미지 분석체계 구축 및 분석방법 검토,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상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일본 경찰청은 2010년 4월 “아동 성착취 및 이미지 분석팀” 등 부서를 신설하는 등 아동음란물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이후 2010년 7월 일본 범죄대책에 관한 각료회의에서는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하여 “아동음란물 근절 종합대책(Comprehensive

9) Police of Japan(2013: 15-18).

10) 児童ポルノの根絶に向けた重点プログラムの策定について, 広報資料, 2009, 警察廳.

<http://www.npa.go.jp/safetylife/index.htm#syonen>.

Measures to Eliminate Child Pornography)” 보고서<sup>11)</sup>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3년 5월 2010년의 보고서 이행상황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보고서<sup>12)</sup>를 발표하였다.

### III. 일반인 및 수사관의 인식조사

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한 국민과 수사관의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 동일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 인식도 조사는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에 의뢰하여 2013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세 이상 전국의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38\%$ 이며, 전체 표본수는 500명이다.

설문문항은 성별, 연령 등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질문 3문항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실태, 대책 등에 관련된 질문 9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이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가급적 질문문항을 단순화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문 중 언급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 사진, 만화 등을 말합니다.”라고 인터뷰 전에 설명하였다.

또한 아동음란물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수사관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뢰하여 2014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 1) 국민 인식도 조사

우선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의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77명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며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50대가 124명으로 24.8%를 차지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화인터뷰의 특성상 주로 50대 이상이 주간에 집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된다. 20대는 71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36명으로 가장 적었다.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계층이기 때문에 전화 인터뷰의 표본에서 가장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의 표는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500명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10대 이하의 응답자에 대해서는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11) <http://www8.cao.go.jp/youth/english/pdf/cp-measures.pdf>.

12) <http://www8.cao.go.jp/youth/english/pdf/cp-measures2.pdf>.

&lt;표 1&gt;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	빈도(명)	퍼센트(%)
20대	71	14.2
30대	36	7.2
40대	92	18.4
50대	124	24.8
60대 이상	177	35.4
합계	500	100.0

다음으로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206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294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전화인터뷰의 특성상 여성이 남성보다 주간에 집에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여성의 응답자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lt;표 2&gt; 응답자의 성별 분포

성별	빈도(명)	퍼센트(%)
남자	206	41.2
여자	294	58.8
합계	500	100.0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화 인터뷰의 경우 전화번호에 따라 거주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의 추출에 있어서 편의 표집(convenient sampl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을 실시할 경우 아예 뽑히지 않거나 적게 뽑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에 따라 표본수를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각각 85명, 즉 전체의 17%씩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 40명, 대구, 인천 등은 각 25명, 그리고 기타지역은 20명 정도로 하였다.

## 2) 수사관 인식도 조사

수사관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8세이며, 응답자중 최연소자는 24세이고, 최고령자는 54세였다. 분포를 보면 35세 미만, 36-39세 미만, 40-45세 미만이 각각 27%를 차지하였으며, 45세 이상은 전체의 20%를 차지하였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의 수사중심축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이 담당하고 있었다. 근무경력을 보면 평균 근무연수는 7년이며 1년 미만도 1명이 있었으며, 24년을 근무한 응답자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3년 미만이 30%, 3-6년 미만이 27%, 6년 이상 10년 미만이 16%, 10년 이상 근무한 응답자가 27%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수사 경력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평균 근무연수는 6년으로 나타났다. 경찰 평균 근무연수가 7년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응답자들이 대부분의 경력을 수사 부서에 근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년 미만 수사 경력자가 3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3년 이상 6년 미만이 27%, 6년 이상 10년 미만이 14%, 10년 이상 수사 경력자는 20%로 나타났다. 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중 6년 미만의 수사경력을 가진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수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면 평균 3년 6개월이며, 최소 1달에서 최대 13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년 미만 사이버 수사경력자가 35%, 2년 이상 4년 미만이 18%, 4년 이상 6년 미만이 31%, 6년 이상이 16%로 나타났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92%였으며, 여성이 8%였다. 전체 경찰에서 여경의 비율이 7.5%인 점을 감안하면 본 표본의 경우 전체 비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학력을 살펴보면 거의 절반이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수사관도 전체의 29%에 달하였다. 즉 3/4 이상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특성상 고학력을 가진 경찰관들이 수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된다. 계급별로 보면 순경이 12%, 경장이 27%, 경사가 35%, 경위가 16%, 경감이상인 10%로 경위 이하의 수사관이 전체의 90%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사관의 근무부서를 보면 49%의 응답자가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51%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 2. 일반국민의 처벌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처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현재의 처벌 수준이 적정하지 아니면 더욱 강화 또는 약화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41.3%인 195명은 현재의 처벌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180명의 응답자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전체의 80%는 현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현재의 처벌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처벌수준을 약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 즉 15명에 불과하였다.

<표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인식 분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	빈도(명)	퍼센트(%)
더 강화해야 한다	195	41.3
강화해야 한다	180	38.1
현재 적절하다	82	17.4
약해져야 한다	12	2.5
더 약해져야 한다	3	0.6
계	472	100.0
무응답	28	
합계	500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의견과 다른 연령층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의 경우 53%의 응답자만이 현재의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반면, 30대는 77%, 40대는 89%, 50대는 83%, 60대는 83%의 응답자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 등에 대해 현재의 처벌수준보다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89%의 응답자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6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하는 등 남녀 간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울산(90%), 강원(90%), 부산(87%) 지역의 응답자들이 처벌 강화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전북 지역의 경우 56%의 응답자만이 현재의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3. 수사관의 처벌에 대한 인식

수사관을 대상으로도 국민 대상 설문과 동일하게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경해야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40.8%의 수사관은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55%의 수사관은 현행 수준이 적정하다고 하였다. 즉, 현재의 처벌 수준이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인식 분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	빈도(명)	퍼센트(%)
더 강화해야 한다	17	34.7
강화해야 한다	3	6.1
현재 적절하다	27	55.1
약해져야 한다	0	0
더 약해져야 한다	2	4.1
계	49	1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5세 미만 수사관의 경우 15.4%, 35세-39세 미만은 46.2%, 40세-44세 미만은 46.2%, 45세 이상의 경우 60%의 응답자가 현재의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수사관의 연령이 높을수록 처벌수준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경찰 근무연수별로 보면 3년 미만은

26.7%, 3-6년 미만은 23.1%, 6년-10년 미만은 62.5%, 10년 이상은 61.5%의 응답자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6년 이상 근무한 수사관과 6년 미만 수사관 사이에 처벌수준에 대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 42.3%, 여성의 경우 25%가 처벌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한 반면, 남성의 53.3%, 여성의 75%는 현재의 처벌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순경의 경우 0%, 경장의 경우 46.2%, 경사의 경우 47%, 경위의 경우 50%, 경감 이상의 경우 40%가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순경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현재의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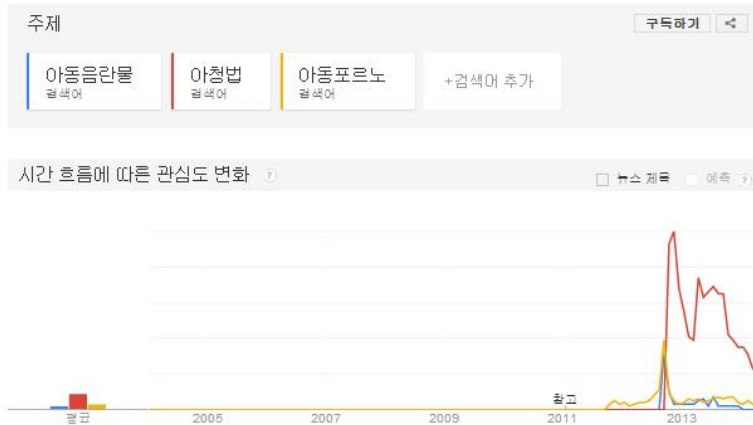
#### IV. 모럴 패닉 모델을 이용한 분석

모럴 패닉 모델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슈에 대해 적용을 하여보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12년 8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생 성폭행 사건(일명 ‘고종석 사건’<sup>13)</sup>)에 의해서 촉발이 되었는데, 고종석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탐닉하였고, 이를 직접 실행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고종석 사건은 사회의 관심과 분노를 야기했으며,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sup>14)</sup>. 이와 같이 2012년부터 아동음란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제고되었는데, <그림 1>은 구글(Google) 트렌드<sup>15)</sup>에서 아동음란물, 아동포르노 등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2012년 8월경 이후에 아동포르노를 필두로 관련 검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색 건수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2012. 8. 30. 01:00경 자신의 집에서 300m가량 떨어진 PC방에 들러 피해 여아 어머니를 만나 “애들은 잘 있느냐”고 물었다. 집에 아버지와 어린 딸들만 있다고 판단한 고종석은 300m가량 떨어진 피해 여아 상가형 주택에 들어가 아이를 이불에 싸안고 납치해 가 성폭행하였으며, 고종석은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 아동이 신고할까 두려워 목을 한 차례 졸랐고 이에 실신하자 숨진 것으로 알고 현장에서 도망쳤다(서울신문, 2012. 9. 2).

14)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사통합검색 서비스(www.kinds.or.kr)를 통해 고종석 사건을 검색(2014. 11. 13)하여 본바, 총 776건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신문 등 지상(紙上) 언론만을 포함한 숫자이며, 방송을 포함할 경우 1,000 여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5) 구글 트렌드는 구글 검색 키워드간의 비율만을 보여준다.



<그림 1> 아동음란물/아청법/아동포르노로 검색한 구글 트렌드 결과

위와 같은 집중적인 언론 보도로 인하여 대중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또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2012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징역형을 추가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다.

현재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한 일반국민과 수사관의 인식을 비교해보면, 일반 국민의 경우 79.4%가 현재의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수사관들은 40.8%만이 처벌의 강화에 찬성하였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17.4%만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절반이 넘는 55.1%의 수사관이 현재의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여러 강력 사건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은 처벌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수사관은 현재의 처벌로도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인식 분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	일반국민(%)	수사관(%)
더 강화해야 한다	41.3	34.7
강화해야 한다	38.1	6.1
현재 적절하다	17.4	55.1
약해져야 한다	2.5	0
더 약해져야 한다	0.6	4.1
계	100.0	100

또한 위 설문조사에서 모럴 패닉 모델이 아동음란물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모럴 패닉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항이 필요하나, 전화 인터뷰인 점을 감안하여 모럴 패닉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언론보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였다.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언론보도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근절에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16.4%인 78명은 언론보도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근절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170명은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는 등 절반이 넘는 응답자(52.2%)가 언론보도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6>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 분포

언론보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다	78	16.4
그렇다	170	35.8
보통	111	23.4
그렇지 않다	88	18.5
전혀 그렇지 않다	28	5.9
계	475	100.0
무응답	25	
합계	500	

이러한 결과는 모럴 패닉 모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도덕적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 이슈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이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집중 보도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이것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근절을 위한 법집행기관의 노력과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인터넷의 확대,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향후 아동음란물의 배포, 판매, 소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경찰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아동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단속이 과연 장기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행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였으며, 모럴 패닉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럴 패닉 모델은 사회가 성폭력, 매춘 등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패닉, 원한, 분노 등이 결합되어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아동음란물 단속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였는지는 생각해 볼 부분이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으로 아

동음란물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관심은 언론의 집중보도로 이어졌으며, 여론의 압력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대응과 처벌의 강화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연구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럴 패닉 모델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국민의 인식과 실제 아동음란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 인식의 차이는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음란물의 소지나 이용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온라인 아동 성학대 행위이며, 아동음란물 자체는 국내외적으로 금제품(contraband)로서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경찰의 집중단속이나 정부의 아동음란물 대책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집중단속이나 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정책과 어울려서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럴 패닉 모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비이성적이고 성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법률과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어 입안되고 집행되기보다는 모럴 패닉 모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정 이벤트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특히 아동대상범죄에 관한 형사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충분한 고려 없이 정책과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불필요한 불안감과 공포에 빠져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립사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에서 올해에만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연구에 \$998,327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입안이 되고 집행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의 국립사법연구소(NIJ)와 같이 관련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해외 유입 경로와 인터넷 매체의 신속성, 유동성으로 인해 아동음란물이 사이버 공간에 범람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직관적으로 아동음란물이 사회이슈화 되었다고 해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학제적 연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바람직한 아동음란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입안된 아동음란물 관련 법령과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태명. 2011.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87: 5-44.  
 김미숙 외. 2009. 아동청소년 성착취근절을 위한 국내외 이행실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기범. 2007.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형사정책연구. 69: 145-182.
- 양정혜. 2010.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이밍. 언론과학연구. 10(2): 343-379.
- 원혜옥. 2005.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한국의 실천. 국제인권법. 8: 47-69.
- 윤정숙. 2012.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 법무부.
- 이건호. 2002.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원상. 2011.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35: 115-141.
- 이용혁 강욱. 2013. 모델 패닉 모델을 통한 성폭력범죄 대책에 대한 연구: 미국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5(4): 123-151.
- 한영수. 2013.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형사정책연구. 93: 173-209.
- Ben-Yehuda, N. 2009. Foreword Moral Panics—36 Years O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9(1): 1-3.
- Campos, P., A. Saguy, P. Ernsberger, E. Oliver, and G. Gaesser. 2006. The Epidemiology of Overweight and Obesity: Public Health Crisis or Moral Panic?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1): 55-60.
- Cohen, S. 1972. *Folk Devils and Moral Panics: The Creation of the Mods and the Rockers*. New York: Routledge.
- Critcher, C. 2009. Widening The Focus Moral Panics as Moral Regulatio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9(1): 17-34.
- ECPAT International. 2006.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Japan*. ECPAT International.
- Levi, M. 2009. Suite Revenge? The Shaping of Folk Devils and Moral Panics about White-collar Crim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9(1): 48-67.
- McRobbie, A. and S. Thornton. 1995. Rethinking 'Moral Panic' for Multi-mediated Social World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6(4): 559-574.
- Weitzer, R. 2005. The Growing Moral Panic Over Prostitution and Sex Trafficking. *The Criminologist*. 30(5): 1-5.
- Young, J. 2009. Moral Panic Its Origins in Resistance, Ressentiment and the Translation of Fantasy into Reali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9(1): 4-16.

---

강욱: 미시간 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경찰대학 행정학과에 재직중이다.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Determinants of Officers’ Attitudes toward Community Policing in South Korea”이다. 관심분야는 사이버 범죄 및 정책, 테러 및 안보분야, 재난 및 위기관리, 아동보호 등이다.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행정학회보, 한국범죄학, 한국 경찰호경비 학회지 등에 논문을 게재하였다(kangw@police.ac.kr).

**장윤식:** 경찰청에서 사이버범죄 수사실무 및 경찰대학에서 교육·연구에 종사하다가 명예퇴직(경정)하였다. 고려대학교에서 공학 박사학위(논문: 국가 사이버범죄 전략에 관한 연구, 2014)를 취득하고, 현재 순천향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초빙교수 및 국제협력사업 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다. 경찰 및 사이버범죄, 법과학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범죄수사학(공저, 2013) 등 저서와 주요 논문으로는 “Measuring digital crime investigation capacity to guide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2014)” 등이 있다(jakejang@sch.ac.kr).

**송영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논문: 로마규정의 국내적 수용과 이행입법, 2010년 8월)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는 경찰대학 국제 사이버범죄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사이버범죄 및 정책, 테러 및 안보분야, 국제형사법, 국제인권 등이다(young1021@police.go.kr).